

東萊府 吏校輩 및 三廳의 梵魚寺에
대한 討索作弊 禁止節目

李 源 鈞
(釜慶大學校 教授)

目 次

- I. 解 說
- II. 역 문
- III. 原 文

I. 解 說

이 節目은 光武6년(1902) 10월에 官内府가 高宗皇帝의 勅旨를 받들어 梵魚寺에 내린 것으로, 가로 30.8cm, 세로 40.5cm 크기의 두꺼운 韓紙의 양면에 다섯 줄씩 글씨를 쓸 수 있도록 朱線이 그어진 野紙 7매에다 59 줄에 걸쳐 붓으로 써 놓은 것이다. 원래는 앞에 표지가 있어 절목의 명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缺落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필자가 절목의 내용을 참작하여 임의로 〈東萊府 吏·校輩 및 三廳의 梵魚寺에 대한 討索作弊 禁止節目〉이라 붙여 보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金井山 梵魚寺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古刹로서 文祖翼皇帝와 神貞翼皇后의 願堂인 동시에 憲宗의 御筆이 봉안되어 있으며, 또 경내에 있는 天台閣은 大皇帝(高宗)의 聖壽萬歲와 皇太子(純宗)의 睿壽千歲를 축원하고, 그 소속 암자인 鷄鳴庵은 英親王의 寶齡無疆을 비는 곳이라서 그 소중함이 다른 사찰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부의 吏胥와 軍校輩들이 사찰의 승려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官需米를 강제로 輸納하게 하는가 하면 鄉廳·武廳·作廳 등 삼청의 부당한 討索과 수탈이 갈 수록 심하여 이를 방치하는 경우 僧徒들이 견디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절을 유지할 수 없는 데에 이를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皇室의 願堂과 祝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던 官内府가 황제의 勅旨를 받들어 9개 조에 달하는 절목을 작성하여 梵魚寺에 내려 보내고 그 준수를 명한 것이 이 절목이다.

이 절목은 舊韓末의 정치가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던 시기에 부산 지방의 대표적 사찰인 梵魚寺에 대한 東萊府의 수탈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釜山市史 研究의 한 자료로서 아래에 그 역문과 원문을 소개한다.

II. 역 문

절목(節目)¹⁾

경상남도 동래부의 금정산 범어사는 삼국 이래의 오랜 사찰로서 땅의 명승(名勝)과 절의 영험(靈驗)이 한 나라에 으뜸이며, 현저하게 이상한 자취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²⁾와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³⁾의 원당(願堂)⁴⁾이요, 현종대왕의 어필(御筆)을 받들어 모시고 있으며, 천태각(天台閣)은 별도로 대황제⁵⁾ 폐하의 성수 만세(聖壽萬歲)⁶⁾와 황태자⁷⁾ 전하의 예수 천세(睿壽千歲)⁸⁾를 빌고, 계명암(鷄鳴庵)은 또한 영친왕(英親王)⁹⁾ 저하의 보령 무강(寶齡無疆)을 빌고 있으니, 그 극중(極重)함이 다른 절에 비하여 매우 다른 데, 본 절의 큰 폐단으로서 더욱 심한 것을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중들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그 고을의 이서(吏胥)와 군교(軍校)¹⁰⁾ 무리들이 관수미(官需米)¹¹⁾라

- 1) 절목(節目) : 규칙의 조목
- 2)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 : 1809~1830. 순조의 세자. 휘는 영(暘, 음이 <대>)이지만 <영>이라 부름,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헌(敬軒)이다.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현종이 즉위하자 왕에 추존되어 익종(翼宗)이 되고 후에 문조 익황제라 하였다.
- 3) 신정익황후(神貞翼皇后) : 1808~1890. 익종비 조씨. 본관은 풍양(豐壤), 풍은부 원군(豊恩府院君) 만영(萬永)의 딸이다.
- 4) 원당(願堂) : 황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불당.
- 5) 대황제(大皇帝) : 곧 고종황제임.
- 6) 성수만세(聖壽萬歲) : 임금이 오래 살기를 비는 말.
- 7) 황태자(皇太子) : 후일의 순종황제.
- 8) 예수천세(睿壽千歲) : 황태자가 오래 살기를 비는 말.
- 9) 영친왕(英親王) : 1897~1970.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이름은 은(垠), 고종의 셋째 아들이요, 순종의 이복동생이며 귀비(貴妃) 엄씨(嚴氏)의 소생이다.
- 10) 이교(吏校) : 이서(吏胥)와 군교(軍校)를 이룸이니 이서는 향리 즉 아전이요, 군교는 지방 수령의 군사적 속료(屬僚)로서 군관(軍官)과 포교(捕校) 등이 있었다.

일건고 무술년¹²⁾부터 시작하여 매 달 몇 섬씩 본 절에 책임을 지워서 수납(輸納)하고 있다. 이른바 시가(時價)에 따라 계산해 준다는 것도 매 섬에 십여 냥씩 값을 감하여 그 손해를 본 것이 수천 냥에 이르고, 이서·군교 및 하술(下率)들이 이를 거두어 모아 쌀 장수에게 주는 까닭에 사미(寺米)를 봉하여 두고 날마다 십여 섬씩 수송하다가 곡식이 떨어져 응하지 않으면, 여러 중들을 잡아 가두고는 장형(杖刑)과 태형(笞刑)으로 매우 독촉하니 관수미가 절에 있는 중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일을 궁구해 보면 참으로 매우 놀랍고 탄식할 만하니, 그 원굴(冤屈)¹³⁾과 통한이 과연 어떻겠는가. 또 향·무·작 삼청(鄉·武·作三廳)¹⁴⁾의 토색하는 작폐와 임의 추심(推尋)¹⁵⁾ 및 각 청에서 벌을 주는 폐단이 갈수록 더 심하여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피하고 있다.

이것을 만약 그대로 둔다면 절을 버티어 보전하기 어려운지라, 아울러 달리 조례를 정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개혁하고 물리쳐서 엄중히 금지하여 차츰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로 지금 칙지(勅旨)를 받들어서 이에 절목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니, 이에 준하여 삼가 준수 시행하고 영구히 바꾸지 말 것이다.

그리고 쌀값의 영조(零條)¹⁶⁾는 곧 날날이 모두 도로 찾아서 하나 같이 뒤에 기록하는 여러 조목에 의거하여 척념(惕念)¹⁷⁾ 거행하되 만약 희미

11) 관수미(官需米) : 수령의 양식으로 거두는 쌀.

12) 무술년 : 광무2년 즉 1898년.

13) 원굴(冤屈) : 원통하게 누명을 씌.

14) 향·무·작 삼청(鄉·武·作三廳) : 향청·무청·작청을 이룸이니 향청은 일종의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으며, 무청은 각 고을의 관청에 소속된 장교들이 근무하는 청사이고, 작청은 향리 즉 아전이 근무하던 곳.

15) 추심(推尋) : 찾아 내서 가져 옴.

16) 영조(零條) : 셈할 때 조금 모자란 남은 액수.

17) 척념(惕念) : 경계하여 두렵게 여기는 마음.

해져서 준수하지 않는 단서가 되풀이 된다면, 결단코 마땅히 별다른 차
림으로 엄중히 처리할 일이다.

광무6년 10월 일

궁 내 부

후(後)

- 一, 사미(寺米)를 어려움 없이 봉하여 두는 것과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폐단이 더욱 심한 것이니 일절 금단할 일.
- 一, 관수미(官需米)는 절에 아무런 상관(上干)이 없는 데도 근래에 강제로 징
수하니, 참으로 이것은 법외(法外)의 것이라, 비록 같은 값으로 사서
쓴다 하더라도 그 해로움이 막심하니 관수미 일관(一畝)은 영구히
침토(侵討)하지 말 일.
- 一, 본 절은 현재 축소(祝所)¹⁸⁾가 되어 있어 소중함이 더욱 각별하니 향
청·무청·작청이 제멋대로 배복(陪僕)을 풀어 죄인을 찾아서 잡는
등의 폐단을 일절 금지할 일.
- 一, 각 청에서 벌을 주고 어려움 없이 꾸짖고 욕하는 폐단은 또한 통렬히
금지할 일.
- 一, 본 절에서 담배·술·가죽신 같은 물종(物種)의 진배(進排)¹⁹⁾는 일절
금지할 일.
- 一, 봉산(封山)²⁰⁾경내에 만약 나무를 베어내거나 투장(偷葬)²¹⁾하는 폐단이
있으면 관(官)에서 엄중히 징벌(懲罰)하여 그 폐단을 막을 일.

18) 축소(祝所) : 축원하는 곳이니 당시 범어사는 왕실의 축소로 되어 있었음.

19) 진배(進排) : 진상(進上)과 같은 말임.

20) 봉산(封山) : 재목을 보호 양성하기 위해 왕명으로 벌채를 금지하는 산.

21) 투장(偷葬) : 남 몰래 지내는 장사.

- 一, 위 향의 여러 조목을 나무판에 게시하여 영구히 준수하여 시행할 일.
- 一, 총섭(摠攝)²²⁾의 각패(角牌)²³⁾는 오로지 다른 절의 예에 따라 성급(成給)²⁴⁾하였으니 영구히 준수할 일.
- 一, 미진한 조건(條件)은 추후에 마련할 일.

22) 총섭(摠攝) : 승통(僧統) 즉 승군(僧軍)을 통솔하는 승직의 하나.

23) 각패(角牌) : 검은 뿔로 만든 호패.

24) 성급(成給) :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이룸.

III. 원 문

一 摠根角牌 一 依他寺例 成信永

為遵守事。

一 未盡



追後磨鍊事。

一本寺之進排草酒鞋等物一

切禁止事

一 封山 如有犯砂偷葬之契



則自官嚴懲杜契事

一 上項諸條 揭板永久遵行事

一本寺現是為 祝所則 所動在別

鄉或作之橙為發陪推拉等

契一切林禁事



一各廳付罰金難詬辱之契心為

痛禁事

弊尤甚者。一切禁斷事。

一官需米。何闕於寺中。而挽近勒

徵。誠是種外。治令。雖由同價。實

用其言。莫甚。需米一款。永勿

侵討事。

宮内府



後

一。寺米無難封置典侵渙等。

價零條言即為這、還推立叫

一依後錄者條言以惕念舉行

引以若 漫德不遵之端則斷

當別般嚴要事

光武六年十月 日



置四寺。難支保。并為另定條例。

立以革祛諸弊。立正嚴戢杜漸。

事。互現秦

勅旨。立外茲成。節目下送。立日准此。

欽遵。施行。立以永久。勿替。立正米。

究其事由。言。誠極駭歎。以。其。所。

寬。屈。痛。恨。的。果。何。如。哉。以。又。有。鄉。

武。作。三。廳。之。詩。索。作。契。以。任。意。推。

尋。及。各。一。廳。付。四。罰。之。契。以。去。蓋。切。甚。

玄。以。緇。徒。以。四。散。逃。避。言。此。善。也。

數千兩。以。互。吏。校。及。下。屬。軍。興。賂。

於。米。商。之。故。互。封。置。寺。米。以。每。

日。十。餘。石。去。輸。送。之。以。死。穀。盡。不。應。

則。投。囚。諸。僧。立。杖。答。困。督。立。以。

官。需。米。以。何。闕。於。寺。刹。僧。徒。乎。以。

徒渙散之境。言如。該郡吏校輩

稱以官需米。立止自戊戌年為始。

立以每朔。或石。或擔。責打本寺輸

納。立止。所謂。從時價計給者。每石

十餘兩。減價。立以。其所見。置以。迨至

皇太子殿下睿壽千歲之詩。

鷄鳴庵之詠。

英親王邸下寶齡无疆則其所。

甚重以此他迥別之句本寺之筆。



弊尤甚者。若不禁戢。竟至僧。

文祖翼白皇帝。

神貞翼白皇后願座可也。

憲宗大王御筆奉安之所。

天台閣之別祝。

大皇帝陛下聖壽萬歲。



鄧目

慶尚南道東萊府金井山。

梵奘寺。三韓忠剝而地之名勝。



斗寺之靈驗。甲於一邦。玄時顯。

異之蹟。不可殫記矣。